

행정자치부 주 의 요 구

제 목 사전 승인없이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변경 후 채용 등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고성군

내 용

1. 사전 승인없이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변경 부적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하며, 지방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XII. 지방전문경력관 인사관리 방안에 따르면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을 위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시에는 지정인원, 직위명칭, 직무내용 등을 포함하는 협의공문에 의하며,

공문에 의한 협의 요청시 직위명칭 뿐만 아니라 직위군에 대해서도 명시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한 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행정자치부 ○○○○○과-0000, 2015. 0. 0.)

그러나, 고성군에서는 지방○○○○○ ‘나’군의 ○○○ ○○요원 ○○○의 퇴직(2014. 12. 31.)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여 신규 충원이 필요하게 되자 해당 직무의 종류,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승인없이 기존의 지방○○○○○ ‘나’군⁶⁾을 ‘다’군⁷⁾으로 임의 조정 한 후 경상남도에 채

6) 별정 6~7급 상당

7) 별정 8~9급 상당

용 의뢰하였다.

이후 2015. 7. 6. 동 채용관련 경상남도 인사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2015. 7. 29. 서류전형과 2015. 8. 10. 면접시험 후 ○○○를 ○○○ ○○분야, 지방○○○○○ ‘다군’으로 최종 합격처리하였다.

2. 인사위원회 서면심의·의결 과정 누락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에 따르면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⁸⁾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고성군에서는 고성군 ○○○○○○○○ 지방○○○○○ ‘다’군의 채용업무를 추진하면서 인사위원회 서면 심의·의결대상임에도 담당자 업무연찬 부족으로 충원계획에 대해 사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앞으로 지방○○○○○○○ 직위 변경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시기 바라며, 공무원 충원계획 등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이 누락되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자진퇴직수당·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우대승진 임용 및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명예퇴직 및 공무원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